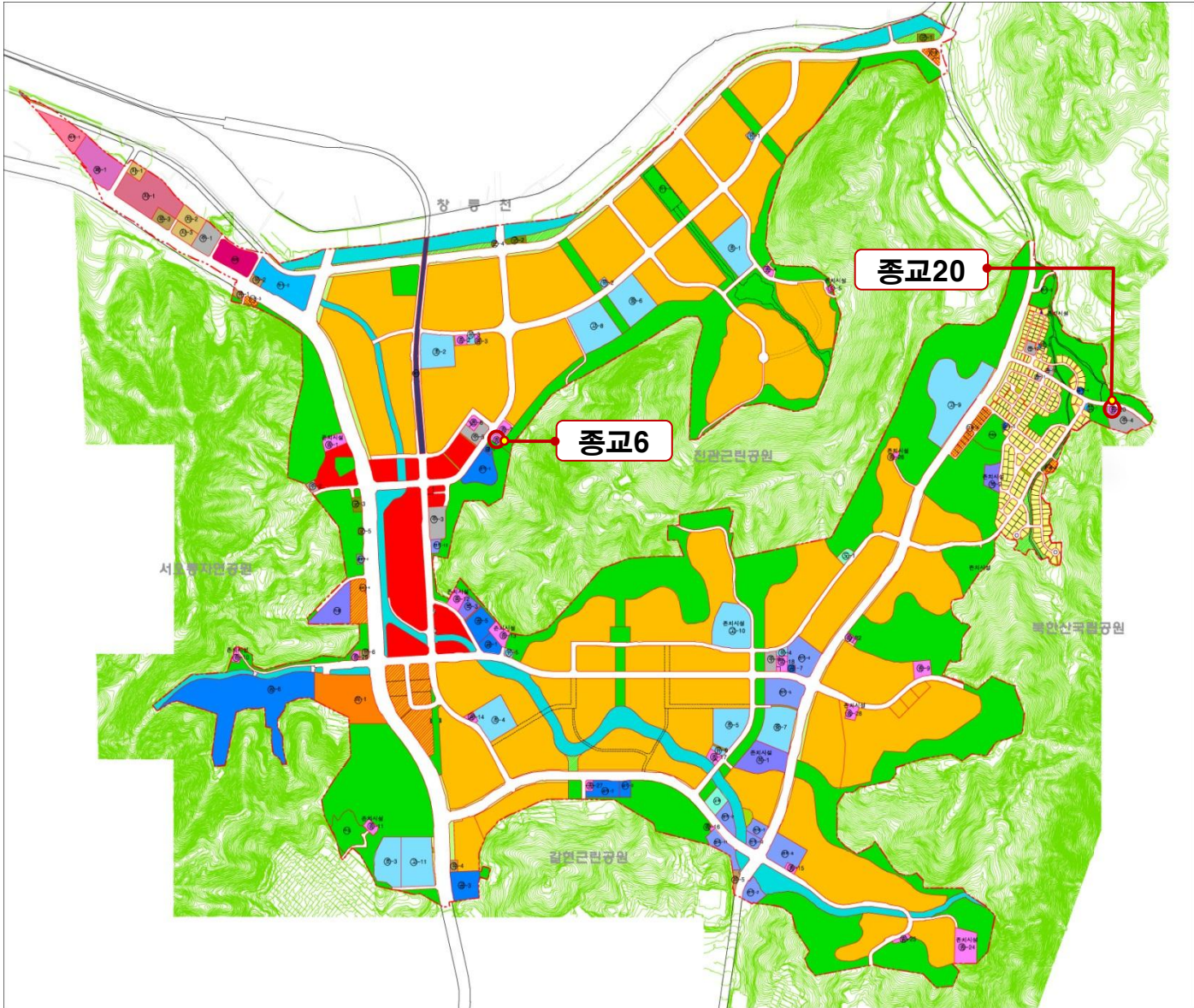


은평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및 매각대상 용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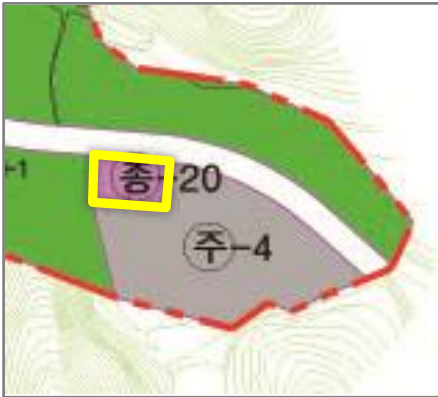
주요 건축규제사항 (지구단위계획 발췌)

• 은평지구 「종교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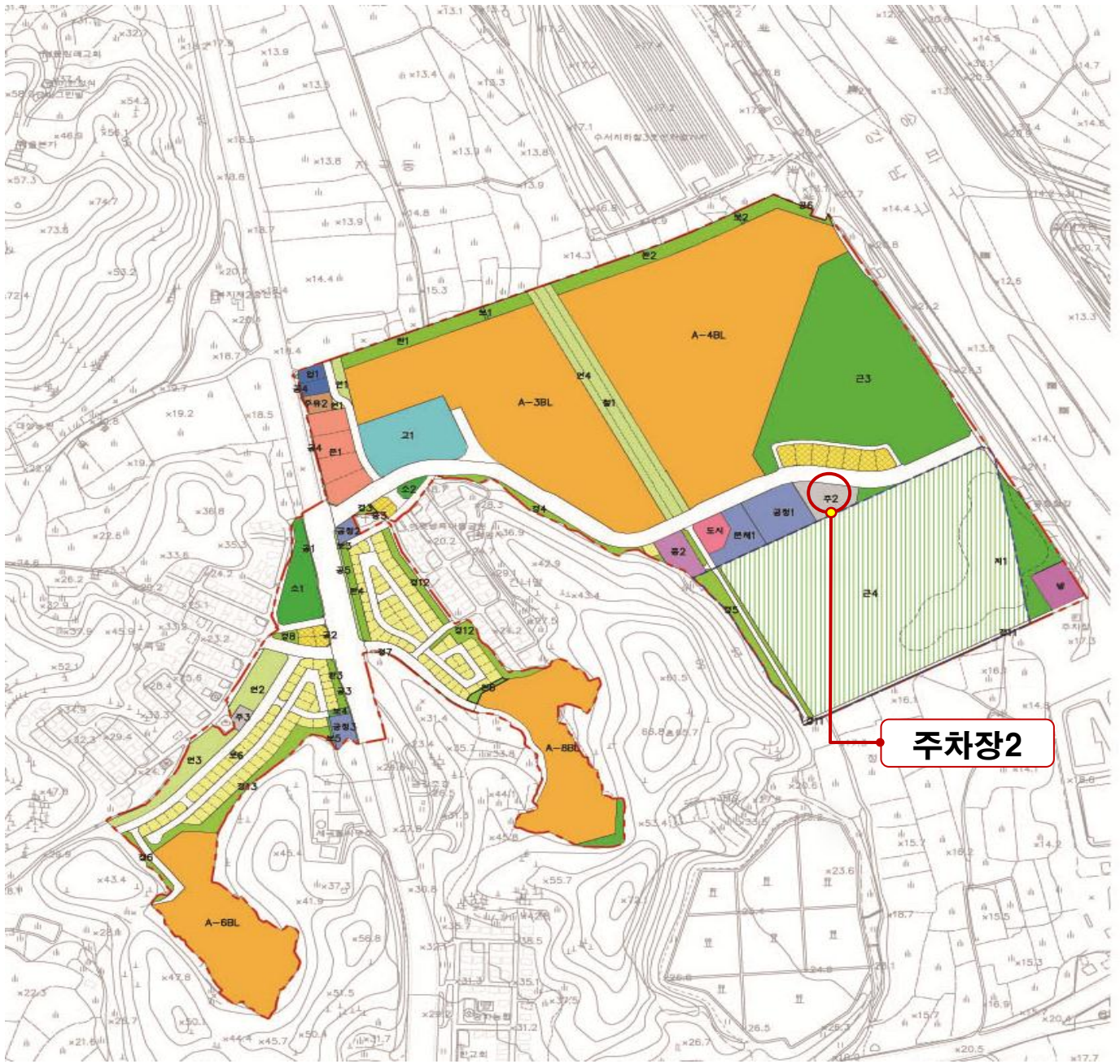
구분	계획내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 ~ 3m

• 은평지구 「종교20」



구분	계획내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용도 :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 ~ 2m

세곡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및 매각대상 용지 위치도



주차장2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

S=1: 5,000



훼손지복구사업지역	근린임원	도로	주유소
단독주택	역사공원	주차장	종교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소림원	교육시설	철도용지
도시형생활주택	관향복지	공원	방수설비
근린생활시설	경관복지	문화체육시설	수도공급설비
업무시설	연결복지	도서관	보행자전용도로
준주거시설	저류시설	문화시설	광공공지

주요 건축규제사항 (지구단위계획 발췌)

• 세곡2지구 「 주차장2 」



구분	계획내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5항 및 「서울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내로 함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리시설 (폐차시설 제외) •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 해서는 안됨 단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1.5m ~ 3m